제23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4차 본회의 (2018. 7.13)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0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7월 1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김명기)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 비서실장 임용을 통해 군정활동 수행, 정보 수집 및 정리,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복잡·다양한 정책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군수의 정책 결정기능을 보좌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65명 → 666명 (증 1명)
  · 집행기관의 총수 : 653명 → 654명 (증 1명)
  ·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(변동없음)

○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

- 총 계 : 665명 → 666명 (증 1명)
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- 일 반 직 계 : 642명 (변동없음)
  · 4급·4~5급 : 4명 (변동없음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○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일반직 공무원 등을 말하며,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외의 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, 별정직 공무원 등이 해당됨.

○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인건비라 함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의 경우 2017년도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한도는 519억원이며 2018년도 당초 예산에 편산된 인건비는 466억원으로 인준인건비 내에서 정원 증원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별정직공무원 비서실장 임용을 위해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65명”을 “66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53명”을 “65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~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5%이내	24%이내	30%이내	27%이내	12%이상	1%이내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-	100%	6% 이내	94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100%			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66	666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42	642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7	12	2	4	1	8
6급 이하	610	610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3	3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	1	1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665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653명 2. (생 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 ---------- 666명-- ----------. 1. ---------- 654명 2. (현행과 같음)